

입법예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2024. 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방식(안 제2조)

- 1)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3조)

-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 관련 사전 공지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2) 실태조사는 3년 주기 정기조사와 활성화 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 1)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라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 2) 매년 교육훈련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안 제5조~제8조)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지정·지정 취소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해 지원항목(서비스 제공 활동비·제공비용) 및 지원 시 고려사항을 규정
-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주기 및 점검·관리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농식품부 보고 등에 대해 규정
- 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등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마.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안 제9조)

-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지원을 받으려면 특화 공동체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2)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 공동체 지원 시 지원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

바.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정표시 등(안 제10조~제12조)

- 1)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및 농식품부 서류 등 확인, 지정 요건 충족 시 지정서 발급 및 정보게시 조치 등을 규정
- 2) 사회적 농장 지정 시 지정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3)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에 대한 예고 통보, 지정 취소 및 관련 기관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

사.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3조)

- 1) 전국지원기관,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서 발급 서식에 대해 규정

아. 농촌 서비스 협약(안 제14조)

- 1)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필요시 다른 서비스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2)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1) 제·개정안 확정 : '24. 4월
- 2) 관계부처협의 : '24. 4월
- 3) 입법예고 : '24. 5~6월
- 4)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4. 7월
- 5) 공포 : '24. 8월

나. 재정수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제정안(별첨)

< 별첨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기관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업무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

페이지 또는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 및 전년도의 교육훈련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및 사업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 또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회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명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법 제9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활동비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대, 협력 등의 방식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업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황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3. 정관 또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5. 농장 운영자의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
6. 농장의 조직 및 인력 현황
7.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
8.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

회적 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 농장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및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회적 농장,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서비스 제공 소요 예산 및 기간
3. 협약당사자
4. 협약당사자별 의무사항
5. 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6. 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③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다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6개월 이내의 보완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기간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상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회적 농장의 심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심사기준
운영	프로그램	1.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가.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등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할 것 다.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할 것 라.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
	내부규약	2.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에 따라 운영될 것
	회계	3.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회계장부를 사용할 것
교육		4. 사회적 농장 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17시간 이상 이수할 것
장소	교육장 규모	5.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면적 이상(단, 표고자목의 면적 기준은 버섯류 기준 적용)
	편의 시설	6. 남녀 구분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실내 활동 공간 및 적절한 휴게공간을 갖출 것
인력		7. 농장장 1명과 사회적농장 프로그램 제공인력(농장장 겸직 가능)등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갖출 것
조직		8.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에 농업 경영체가 참여하고, 해당 조직의 농업활동이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에 이용될 것
시설·설비		9. 소화기, 구급약품, 개인보호장비 등을 구비할 것

사회적 농장 지정표지(제11조 관련)

1. 표시방법은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 및 글자를 결합하여 표시하되, 지정 사회적 농장 내·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간판을 게시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경우 표시도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가로형



나. 세로형



2. 작도법

- 가. 표시도형 및 글자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1) 표시도형 및 글자를 포함한 가로형은 가로(100) : 세로(26.49), 세로형은 가로(100) : 세로(70.88)의 비율을 유지한다.
- 2) 표시도형만 사용할 경우, 가로(100) : 세로(89.65)의 비율을 유지한다.
- 3) 최소 규격의 기준은 가로형은 가로 25mm, 세로형은 가로 15mm로 한다.
- 4) 표시도형 및 글자를 변경하거나 재배치하지 않는다.

- 나. 표시도형의 배색은 짙은 녹색, 녹색, 연한 녹색을 사용하고, 글자의 배색은 짙은 회색을 사용한다. 표시도형과 글자의 배색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짙은 녹색 : C90 M30 Y95 K30 / R0 G104 B56
- 2) 녹색 : C85 M10 Y100 K10 / R0 G148 B68
- 3) 연한 녹색 : C75 M0 Y100 K0 / R57 G181 B74
- 4) 짙은 회색 : C15 M0 Y10 K80 / R72 G83 B82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바탕면의 재질의 특성상 색상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바탕면과 색상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색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채색(흰색,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사회적 농장 지정번호 및 농장명 병행 표시

- 가. 사회적 농장 지정번호는 표시도형 상단 왼쪽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농장명은 제1호가목의 경우 하단에 표시하고 제1호나목의 경우 오른쪽에 표시할 수 있다.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및 사업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회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명부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확인	결재	지정서 발급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단체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제 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

- 법인·단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서비스의 범위:
- 서비스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4. 해당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교육의 이수증 5. 해당 사회적 농장의 내부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해당 사회적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 자료 7. 해당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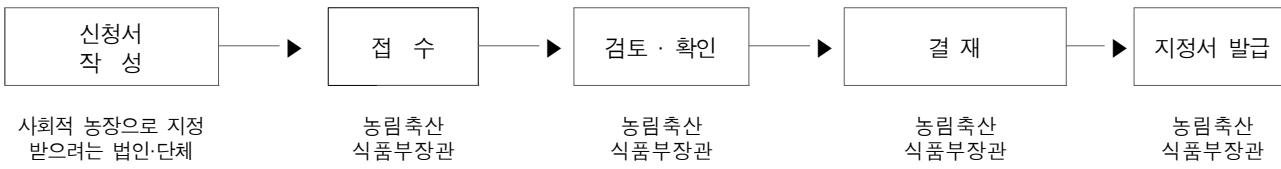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사회적 농장 지정서

- 법인·단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서비스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제 호

전국지원기관 지정서

1. 법인·기관명:

2. 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제 호

지역지원기관 지정서

1. 법인·기관명:

2. 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